주 문

1. 피고 C은 원고에게 5,421,821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 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